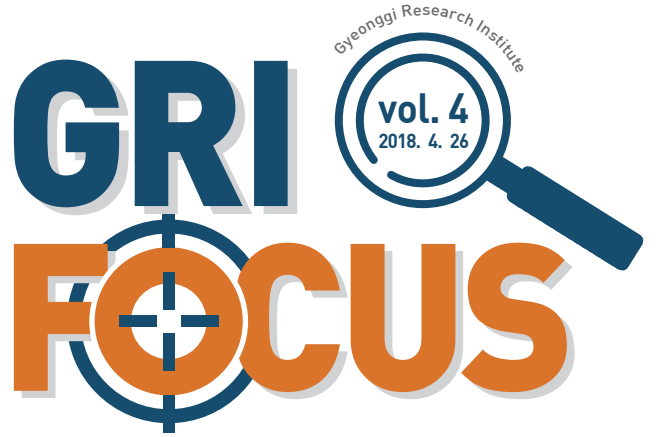


사회적 연대를 위한 사회적 상속, 기본자본

[작성 김을식 연구위원 · 이지혜 연구원]



발행처 경기연구원 | 발행인 이영조 | 홈페이지 www.gri.re.kr | 원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Insight

악화되는 고용난 속에 청년층 가구의 소득은 정체 내지 감소되어 결혼과 출산 등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8%(2017년)로 전체 실업률(3.7%)의 2.6배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7년, 7.2%)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
- 지난 5년간(2012~17년) 30세 미만 청년층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13.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제일 낮는데 반해 부채 증가율은 85.9%로 월등히 높은 수준
- 노인에 한정되던 빈곤 위험 집단이 청년층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
 - 18~24세 빈곤율은 19.7%(2013년)로 60~64세 빈곤율(20.3%)과 비슷한 수준

청년에서 성인으로의 성공적인 이행과 세대 간 불균형을 바로잡는 수단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자본

- 1796년 토마스 페인이 사회적 상속을 논의한 이후 애커먼과 알스투에 의해 청년층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을 지원하는 기본자본에 대한 논의가 체계화됨
 - 사회적 지분급여(기본자본)는 청년기의 대학교육, 창업 밀착 등 사회정착을 위해 쓸 수도 있고 연금으로 전환해 노년기를 대비하는 데에도 사용이 가능
- 사회적 지분급여는 모든 시민에게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비슷해 기본자본(basic capital) 혹은 기초자본(capital endowment)라고도 함
 - 기본자본이 소득·자산,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점은 기본소득과 같지만, 일정 나이가 된 청년들에게만 일회성으로 자산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앳킨슨은 소득 불평등과 함께 세대 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기본자본에 찬성
 - 자산과 부의 불평등은 상속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개인의 출발선은 모두 다르게 되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 상속이 필요하다고 주장
- 기본자본의 경우 수급자가 단기간에 급여를 모두 탕진해버리는 문제, 창업 이후 사업 실패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

악화되는
고용난 속에
새롭게 빈곤 위험
집단화되고 있는
청년층의 성공적인
성인 이행을 위해,
세대 간 불균형을
교정하는 수단 중
하나로
기본자본에 대한
사회적 관심 필요

Zoom In 기본자본 논의의 배경 및 쟁점

악화되는
고용난 속에
청년층이 새롭게
빈곤 위험 집단화되어
결혼, 출산 등
성인으로서의 이행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매우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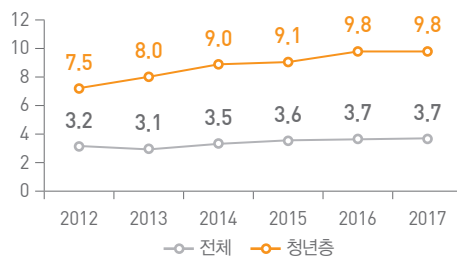
악화되는 고용난 속, 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노출된 우리나라 청년층

-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8%(2017년)로 전체 실업률(3.7%)의 2.6배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7년, 7.2%)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
 - 고용난 속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소용되는 시간과 비용도 상당해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은 첫 취업까지 정규교육 외 취업 사교육에 평균 1.2년의 시간과 510만원의 비용을 소요(한국고용정보원, 2016)
- 현재의 복지제도는 근로시장을 편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청년층이 수혜를 받기 어려운 상황
 - 청년층에게 근로조건, 소득요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제도로 제공되는 것은 건강보험이 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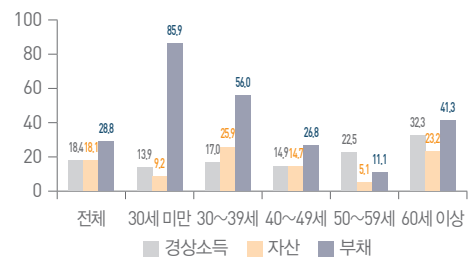
청년층 가구의 소득은 정체 내지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 등 성인으로서의 이행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난 5년간(2012~17년) 30세 미만 청년층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13.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제일 낮는데 반해 부채 증가율은 85.9%로 월등히 높은 수준
 - 경상소득 증가율은 연령대와 비례하는 모습으로 30세 미만 청년층 가구주 가구의 소득 증가율(13.9%)이 가장 낮고 60세 이상 노인 가구주 가구의 소득 증가율(32.3%)이 가장 높음
 - 청년층 가구의 경상소득 증가율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경상소득 증가율] 2013년 5.2% → 14년 12.4% → 15년 0.0% → 16년 -4.1% → 17년 0.4%
 - 반면 부채 증가율은 30세 미만 청년층 가구주 가구의 부채 증가율(85.9%)이 가장 높는데 이는 전체 부채 증가율(28.8%)의 세 배 수준
- 노인에 한정되던 빈곤 위험 집단이 청년층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
 - 18~24세 빈곤율은 19.7%(2013년)로 60~64세 빈곤율(20.3%)과 비슷한 수준
- 고용난과 복지정책 사각지대 속에 청년들은 소득이 정체·감소되는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들에게 취업, 결혼과 출산은 졸업 후 당연한 수순이 아니라 엄청난 비용과 주변의 지원이 필요한 과업
 - 이에 따라 청년층을 가리키는 삼포세대, 오포세대 등의 신조어가 등장

■ 전체 및 청년층 실업률 추이(%)



■ 연령별 가구 소득·자산·부채 증가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2012~17년 각 년도)

청년에서 성인으로의 성공적인 이행과 세대 간 불균형을 바로잡는 수단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자본

- 1796년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이 처음으로 사회적 상속을 논의한 이후 애커먼(Ackerman)과 알스투스(Alstott)에 의해 청년층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을 지원하는 기본자본에 대한 논의가 체계화됨
 - 애커먼(Ackerman)과 알스투스(Alstott)이 제안한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s)는 모든 시민들이 21세가 되었을 때 총 8만달러(당시 중위 가구 연간소득의 약 두배에 해당)를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제도
 - 급여는 청년기의 대학교육, 창업 밀천 등 사회정착을 위해 쓸 수도 있고 연금으로 전환해 노년기를 대비하는 데에도 사용이 가능
- 사회적 지분급여는 모든 시민에게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비슷해 기본자본(basic capital) 혹은 기초자본(capital endowment)라고도 함
 - 기본자본이 소득·자산,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점은 기본소득과 같지만, 일정한 나이가 된 청년들에게만 일회성으로 자산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지급 대상과 방식, 예상 효과 등은 차이가 있음
- 앳킨슨(Atkinson)은 소득 불평등과 함께 세대 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기본자본 도입을 찬성한 바 있음
 - 자산과 부의 불평등은 상속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개인의 출발선은 모두 다르게 되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 상속(minimum inheritance)이 필요하다고 주장
- 기본자본은 기본소득에 비해 소요되는 재원도 적어 현실가능성이 높은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중 하나
 -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소득 도입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290조(강남훈 외, 2009)인데 반해 기본자본 도입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7조원 수준(문수열·김병, 2012)

청년층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자산 지원 논의인
기본자본은
사회적
상속을 통해
소득 불평등과
세대 간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제안


청년층이 미래의 주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

- 청년은 현재 인구 비중으로는 20%에 지나지 않지만 미래의 100%를 책임지게 될 주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성인으로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기본자본을 비롯한 청년층을 위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
 - 기본자본의 경우 수급자가 단기간에 급여를 모두 탕진해버리는 문제, 창업 이후 사업 실패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
 - 일부의 가능성만으로 기본자본 도입을 반대하기 보다는 기본자본을 비롯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검토가 필요
 - 새로운 제도에 대한 검토 시 지급 대상 선정, 급여 지급 방식과 용도 제한 등을 우리사회에 적합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정책 실험 등을 통한 단계적 도입이 필요

Spotlight 기본자본 최초 사례, 영국의 아동신탁기금

2005년 영국 정부는 기본자본의 아이디어를 담은 아동신탁기금을 도입하였으나, 재정적자 감축 계획 등에 따라 2011년에 폐지

영국은 기본자본 구상을 실제 실행에 옮긴 첫 번째 국가로 부모의 소득과 상관 없이 모든 아동에게 최소 500파운드씩 지급되는 아동신탁기금 도입

- 2005년 토니 블레이어 정부는 모든 아동이 성인의 삶을 시작할 때 금융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을 도입
- 아동신탁기금의 지원대상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출생하였고 영국에서 거주하며 이민법(immigration restriction)이 적용되지 않은 모든 아동
 - 특정한 의무요건이 없고 부모의 소득·자산 상태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급여(Universal grant)의 성격을 가짐
- 정부는 최초에 개인계좌 개설을 위해 Voucher 형태로 £250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250를 보충지급(additional payment)
 - 정부는 아동이 7세가 되는 시점에 계좌에 다시 £250를 추가로 지급(further payment) 하며, 이 경우에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250를 추가 보충지급(additional payment)
- 아동 명의로 개설된 아동신탁기금(CTF) 계좌에는 부모, 가족, 친구 누구든 관계없이 연간 £1,200까지 일시에 또는 매월 분할하여 불입이 가능
 - 정부 지원금은 불입이 불가능하며, 최소불입액(minimum contributions)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음
 - 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해당 아동이 16세가 될 때까지 계좌를 관리하며 아동이 18세가 된 이후에는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인출이 가능
- 아동신탁기금은 매년 신규계좌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대중적 지지를 얻었으나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 재정적자 감축 계획 등에 따라 2011년 폐지
 - 개인 기여분의 비중이 큰 편이고 과세가 되지 않아 고소득층의 증여에 이용될 수 있어 당초 목표인 자산 불평등 완화에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비판 존재
 - 2011년 영국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선정함에 따라 향후 매년 최소 5억 파운드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신탁기금 폐지를 결정
 - 이후 아동신탁기금은 정부 지원금이 없는 Junior ISA로 변경 

■ 아동신탁기금 계좌 수 추이

출생연도	신규계좌(개)	보충지급계좌(개)	(비중)
2003	417	149	(36%)
2004	709	219	(31%)
2005	737	237	(32%)
2006	744	241	(32%)
2007	762	260	(34%)
2008	778	271	(35%)
2009	771	322	(42%)
2010	735	320	(44%)
2011	486	209	(43%)
합계	6,142	2,228	(36%)

■ 아동신탁기금 관련 비용

회계연도	비용(백만파운드)
2005-2006	444
2006-2007	257
2007-2008	212
2008-2009	296
2009-2010	387
2010-2011	341
2011-2012	86
합계	2,023

자료: HMRC CTF Statistical Report 2012

- 문수열 · 김병(2012) 시민권에 기초한 사회적 지분 급여의 도입 필요성 연구
- 한겨레 21(2015, 제1075호) 청년, 빈곤의 미로에 갇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청년 고용 및 빈곤의 국제적 조망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7년 2월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08) 어린이 장기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도입방안
- Anthony B. Atkinson(2015) Inequality, What can be done?
- Bruce Ackerman, Anne Alstott, Philippe Van Parij(2010) Redesigning Distribution
- Timothy Edmonds(2014) Child Trust Funds & Junior ISA transferability, House of Commons Briefing Paper No. 06468.